



# 지방자치 정책 Brief

2023. 12.  
No.172

##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 따른 지방행정의 검토과제

최지민 부연구위원

### 주요내용

#### 김포의 서울편입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확대

- 2025년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「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」의 발의에 따라 전국단위의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확산됨
-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의 변경과 같은 행정체제개편이 행정협력에 이르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며 행정체제개편은 불발된 사례가 많고 추진비용이 발생하므로 다양한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택해야 함

#### 지방자치법상 행정협력 수단이 존재하며 각 방식의 장단점을 통한 합리적 선택 필요

- 연계할 사무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데 그 중 현재 지자체가 겪고 있는 최적의 해결수단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
- 특히, 그간 추진되었던 통합식 접근은 단기간에 통합추진이 이루어질 것처럼 전개되지만 최종 통합에는 이르지 못하는 양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대응이 중요함

#### 행정체제개편시 일반법과 특별법간 조화 필요

- 최근의 중요한 행정체제개편 변화는 특별법 형태로 추진되어 일반법 기반의 일반자치 간 관계정립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
- 관계 법제정비를 통한 일반법의 체계와 특별법상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

#### 기능적 연계 및 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

- 해외국가는 행정체제 개편과 기능통합의 두 가지 방식을 균형있게 추진하고 있음
- 물리적 개편 시 지방자치법 제5조의 개별개편방식에 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함
- 기능적 통합의 경우, 해외 초광역협력 사례의 지원체계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함
- 아울러 현행 지방자치법상 행정협력 제도의 내실화 방안 마련도 필요함

## 01

### 논의 배경



#### 김포의 서울편입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확대

- 2025년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「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」의 발의에 따라 전국단위의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확산됨
  - 김포는 한강 남쪽에 있으나 서울과 인천에 접하고 있어서 지리상으로 고립된 지리적 특성과 서울로의 출퇴근 시 만성적인 교통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임
  - 경기도의 분도 추진과정에서 지리적 교류가 없는 경기북도에 속할지,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경기남도에 속할지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서울로의 편입 방식이 대안으로 대두됨
- 김포의 서울 편입은 「지방자치법」 제5조제2항 지방행정체제개편<sup>1)</sup>의 유형 중 하나인 “구역변경”에 해당(〈표 1 참조〉)

〈표 1〉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범위와 사례

경우	관련 국내 사례	비고
[1] 행정구역 경계 변경		
[2] 행정구역 변경	[2-1] 읍·면·동의 타 시·군·구 편입	생략 지속적 연구 필요 (「지방자치법」§5~§10)
	[2-2] 도의 자치시·군 → 특·광역시 자치구	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(진행중),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('23完) 전자는 인천·부천·시흥·김포의 메가시티 논의 연장선
	[2-3] 특·광역시 구 → 도의 자치시·자치군	비현실적 고려할 필요 없음
[3] 행정구역 분할·설치	[3-1] 읍·면·동 수준	생략 인구감소대응(compact city) 차원에서 선제적 논의 필요
	[3-2] 시·군·구 수준	인천시 자치구 신설 (기존 자치구 분할) 폐지 후 신규 설치는 행정구역 통합과 연계 검토 필요
	[3-3] 시·도 수준	경기남도·북도 분할(진행중)
[4] 행정구역 통합 (「지방분권균형발전법」§44~§61)	[4-1] 도·농복합 형태의 시·군 통합	'95.1~'14.7 청주·청원 포함 42개 도·농통합시 출범 (최근 동해·삼척, 목포·신안, 구미·칠곡, 전주·완주 논의) 최근 인구감소대응 차원에서 재논의, 군의 도농통합시 전환 논의와 연계
	[4-2] 도의 자치시 (군 포함 가능) 통합 → 대도시	마산시·창원시·진해시 통합('10完) '94 이후 도·농통합 논의와 함께 진행 (함안군 일부 당초 포함). 도·농통합시와 다른 맥락으로 메가시티(특자체)에서 논의 필요
	[4-3] 광역통합 및 메가시티(특자체) 논의	부·울·경 이후 광역통합(부산·경남) 대구·경남, 광주·전남, 세종·대전, 접경권 등 특자체 연계 논의는 별도 진행 필요
[5] 행정계층 변경 (단층↔복층)	제주 기초지자체 폐지('06) 및 재도입 논의(진행 중)	특별자치시·도 논의와 병행 필요

\* 자료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(2023)

1)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자치와 지방행정관리의 관점에서 “관할영역”(행정구역, 자치구역), 법인격인 “지방자치단체 수준”(자치계층)과 “수행 기능”(사무의 처리주체)를 포괄함. 이의 변화를 “지방행정체제개편”이라고 하며 행정구역의 폐지·설치·분리·통합, 구역변경, 경계조정, 명칭변경 등의 ▲행정구역의 개편과 ▲자치계층의 개편(단층제, 중층제)의 차원으로 구분됨

- 김포의 서울 편입은 경기도 분도에 따른 소속 광역지자체에 대한 결정과 그간 지속적인 정책이슈로 지적된 교통·생활권 불일치 문제의 해결수단으로 “구역변경”을 택한 것임
- 이는 기존의 행정구역의 유지를 전제로 한 지자체 간 연계협력이 지방자치의 제도와 여건상 쉽지 않다는 인식에 기반한 결정임



### 행정체제개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, 지자체간 협력방식을 고려한 최적의 대안 선택이 중요

- 행정구역은 생활권 변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정도의 적정규모가 아니라는 점들로 인해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
  - 1988년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을 통해 대도시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직할시(광역시)의 설치와 도의 관할권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광역행정의 분절성이 심화되었다는 문제인식 존재
  - 1995년 도농복합시 도입에 따른 다수의 시·군단위의 통합, 2009년 광역시·도 폐지를 통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도와 무산,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, 2018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시도와 무산, 2020년 이후 대구-경북, 대전-세종, 광주-전남 통합시도 등 다수의 지방행정체제 변화 시도
- 그러나 「지방자치법」 상 행정구역의 변경과 같은 행정체제개편이 행정협력에 이르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며, 행정체제 개편은 불발된 사례가 많고 추진비용이 발생하므로 다양한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택해야 함

02

## 현행법상 다양한 지자체간 행정협력수단



### 지방자치법상 행정협력 수단이 존재하며 각 방식의 장단점을 통한 합리적 선택필요

- 현행 「지방자치법」 상 <표 2>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행정협력의 수단이 존재함
  - 다만 법상 사무의 공동처리와 사무위탁이 존재하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, 연합방식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형태로 최근에 들어서야 「지방자치법」에 명문화되었으나 부울경의 출범이 불발됨
  - 통합의 경우,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이 1990년대 중반에 대거 이루어졌으나,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은 성사되지 못함
- 연계할 사무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, 그 중 현재 지자체가 겪고 있는 최적의 해결수단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

| &lt;표 2&gt; 지방자치단체 행정협력수단 |

행정구역의 변경없는 유연한 방식			↔	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구조적 방식		
개별사무의 연계			↔	종합사무의 연계		
추진비용 낮음			↔	추진비용 높음		
협력 수단	사무위탁	행정협의회	지방자치단체 조합	특별지방자치 단체	지자체 통합적 접근	지자체 권한특례 (특별법의 특례)
근거	지방자치법 제168조	지방자치법 제169~제175조	지방자치법 제176~제181조	지방자치법 제199~제211조	지방자치법 제5조	지방자치법 제4조, 제197조~제198조
내용	• 지자체간 협의에 따른 규약을 통해 위탁사무 처리	• 2개 이상 지자체 사무의 일부, 공동처리 (법인격 지위)	• 2개 이상 지자체 사무의 일부, 공동처리 (법인격 지위)	• 특정목적을 위한 광역적 사무처리 • 규약에 근거하여 의회와 특자체 장을 구성	• 하나이상의 지자체가 합쳐서 새로운 행정구역을 창설 • 중심도시에 인접지역의 편입 • 도·농복합 형태의 시·군 통합 • 도의 자치시 (군 포함 가능) 통합 → 대도시 • 광역통합 및 메가시티 • (특자체) 논의	• 대도시, 특별자치시도 출범에 따른 권한부여 • 세종, 제주,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사항 부여
방식	• 지방의회의결 불필요	• 지방의회의결 불필요 • 기초협의회는 광역보고, 광역협의회는 행안부 장관 승인	• 지방의회의결 필요 • 기초조합은 광역승인, 광역조합은 행안부 장관 승인 • 2개 이상 구역을 거친 경우 행안부 장관 승인사항	• 지방의회의결 필요 • 행안부 장관 승인사항	• 법률제정필요 • 분할폐지, 구역변경, 명칭변경: 지방의회 의견 청취 (주민투표시 생략) • 경계변경시 지방의회 과반수출석, 2/3 이상 동의	• 서울, 세종, 제주: 법률에 따른 특례 • 50만 이상 특례시: 대통령령
권한	계획권, 집행권, 예산권 없음	계획권, 집행권, 예산권 없음	계획권, 집행권 제한적으로 존재	계획권, 집행권, 예산권 있음	계획권, 집행권, 예산권 있음	종전보다 더 큰 계획권, 집행권 예산권 보장
기관 설치	불필요	불필요	필요	필요	필요	-
사무 처리범위	비제한	비제한	제한	비제한	비제한	-
법적 구속성	중간	미약	중간	강력	매우강력	-
체제 개편 비용	없음	없음	조합설립에 따른 파견인력 운용 비용, 사무관리비용 부담분	단체구성, 의회구성에 따른 인력배치, 관계법 개정	기존 광역-기초변화 시군구 지위변화에 따른 지방세입구조, 지방재정교부제도 근본적 변화	

\* 자료 : 금창호(2021)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

- 통합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을 얻어내자는 의견이 쉽게 선택되는 데에는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맥락이 존재(김대욱, 2023; 김병준, 2022)
- 중앙집권형 구조에 따른 지시와 복종의 행정문화와 지역권력의 불균형, 사회적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협상과 협의를 통한 갈등관리의 역량 미흡
- 동시에 다수의 기존 협력제도의 한계가 축적되어 있어, 확실하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선호
  - 사무위탁은 혐오시설 설치의 경우 지역이기주의와 결합하여 지방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, 의견 수렴절차의 미비, 관련 세부절차의 미흡, 정보공유체계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
  - 조합은 각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파견인력이 순환근무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, 재정 측면에서도 독자적인 재정 운영권이 없어 사업수행의 한계
  - 특별지자체 출범으로 각광을 받았던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경우, 추진 정치권력의 교체에 따른 추진동력 상실과 특행기관과의 업무중복, 지역 간 혜게모니 다툼, 향후 행정통합의 걸림돌 우려로 인해 좌초
- 특히 통합식 접근은 단기간에 통합추진이 이루어질 것처럼 전개되지만 최종 통합에는 이르지 못하는 양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대응이 중요함
- 행정구역 통합을 시도한 대구-경북과 광주-전남은 논의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역 내 갈등이 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연기됨
- 논의가 진행될수록 주민의견 수렴 없는 하향식 방식이라는 비판과 추진 정치권력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이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주민의 낮은 관심과 공감대 확보 실패의 양상이 반복됨
- 통합 불발에도 최초의 통합합의에 근거하여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

## 03

### 제도적 지원사항



#### 행정체제개편시 일반법과 특별법간 조화 필요

- 최근의 중요한 행정체제개편 변화는 특별법 형태로 추진되어 일반법 기반의 일반자치와의 관계정립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
- 일반법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음
- 과거 세종과 제주의 출범뿐 아니라 최근 2년 사이에 강원과 전북의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별법이 제정·시행되어 전국 17개 시·도 중 4개의 시·도가 특별자치라는 이름을 사용 중임
- 특별법은 비교적 제·개정이 쉽고, 사회적·정치적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의 지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법체계를 복잡하게 하며 통일성과 조화성을 저해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
- 관계 법제정비를 통한 일반법의 체계와 특별법상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

- (법제 통합) 일반법인 「지방자치법」과 특별법인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분산된 체제의 일원화 검토가 필요함
- (지방자치법 개정) 현행의 「지방자치법」 등에서 행정구역의 개편과 관련된 법제는 시·군·자치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광역단위인 시·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못하여 광역통합의 방식과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



## 기능적 연계 및 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

- 해외국가는 행정체제 개편과 기능통합의 두 가지 방식을 균형있게 추진하고 있음
- 물리적 개편 시 「지방자치법」 제5조의 개별개편방식에 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함
  - 개편 시 발생하는 갈등관리체계의 구축: 개편의 추진원칙, 갈등조정방식의 명시화, 개편추진기구 구축, 개편추진기구 결정에 대한 강제력과 이의신청절차의 마련
- 기능적 통합의 경우, 해외 초광역협력 사례의 지원체계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함
  - 타 광역권과의 협력 연계망 구축이 핵심인데 이러한 과정은 교통의 권역 내 내부연결망 확보, 서울방향의 교통망 확충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(국토연구원, 2022)
  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이 담보하지 못하는 초광역권 교통망 구축 필요
  -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,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2.0,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초광역권 육성과제와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검토 필요(국토연구원, 2022)
  - 지자체 행정구역을 넘어선 현행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계정과 자율계정 마련 필요
- 아울러 현행 「지방자치법」 상 행정협력 제도의 내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
  - 행정협력에 관련된 기구의 조직운영의 자율성 부여 필요
  -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, 설립 측진을 위한 재정인센티브 부여 필요
  - 행정협력의 중복지출을 막기 위한 특별행정기관의 정비 필요

### 참고문헌

- 고창수·이황웅·김우건(2022)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의 재정적·경제적 영향분석. 세종: 한국조세재정연구원.
- 국토연구원(2022) 국토 특집: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정책 방향. 국토연구원 간행물.
- 금창호(2018)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연구. 원주: 한국지방행정연구원.
- 금창호·권오철(2021)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변경법제에 관한연구. 원주: 한국지방행정연구원.
- 금창호·최지민 외(2021) 광역행정체제 구축관련 정책개선 연구. 세종: 행정안전부.
- 김대욱(2023) 광역행정통합 정책사례연구. 「한국지방행정학보」 제20권 제1호(2023. 4): 27–48.
- 김병국 외(2007) 지방행정체제 개편연구. 원주: 한국지방행정연구원.
- 김준우·안영진(2010) 대도시 정책형성에서 시도연구원과 시민단체의 역할: 광역 지자체의 도시지배구조 논의를 중심으로. *국토지리학회지*, 44(4): 609–622.
- 박경현(2022)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 전략. 세종: 국토연구원.
- 이승종(2008) 지방역량강화를 위한 광역자치구역의 개편방안. 행정논총., 46(3): 361–390.
- 최윤철 외(2012) 행정특별법의 현황, 문제점과 개선방안. 세종: 법제처.
- 한국지방행정연구원(2023)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요 내용과 쟁점, 내부자료.
-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(033-769-9856, jmchoi@krila.re.kr)

### 내용문의

